

의안번호	제3068호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연월일	2026. 3. 13.

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068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6. 3. 13.

제출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요청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요청을 반영하고,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성과평가 인용 조항 수정(안 제7조, 제14조)
- 나. 위촉위원의 구성비율 확대(안 제9조)
- 다. 성과평가 절차 간소화 및 평가 근거 확대(안 제9조, 제16조)
- 라. 위원 해촉 규정 신설(안 제10조의2)
- 마. 수탁기관 선정 결과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한 축소(안 제13조)
- 바. 감사 의무화 및 시정·문책 규정 신설(안 제1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- 개선의견[복지지원과-6762(2026. 2. 6.)호]

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결과		
<p>제10조의2(위원의 해촉)에 ‘7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’, ‘8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’ 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수용 <input type="checkbox"/>일부수용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불수용</p>	<p>제10조의2 제5호에서는 직무대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성폭력범죄 및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해촉이 가능함</p> <p>아울러, 특정 범죄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할 경우, 열거되지 아니한 중대 범죄나 비위 사실이 규정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으며, 이에 따라 해촉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불수용함</p>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6-263호
 - 가) 예고기간: 2026. 2. 10.~2026. 3. 3.(21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4호 중 “제18조”를 “제16조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심사·선정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를 심의하기”를 “심사·선정하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2분의 1”을 “3분의 2”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
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3. 사망·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4.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
5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6.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

아니한 경우

제13조제3항 중 “15일”을 “10일”로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제18조”를 “제16조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본문 중 “위하여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”를 “위하여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다른”을 “다른 법령이나”로 한다.

제17조의 제목 “(지도·점검 등)”을 “(지도·점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,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민간위탁 사무의 감사)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,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① (생략)</p> <p>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재계약할 경우 <u>제18조에</u> 따른 성과평가 결과</p>	<p>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제16조</u> ----- -----</p>
<p>제9조(민간위탁심의위원회)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<u>심사·선정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를 심의하기</u> 위하여 고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원의 <u>2분의 1</u> 이상은 관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9조(민간위탁심의위원회) ① ----- <u>심사·선정하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. ----- <u>3분의 2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0조의2(위원의 해촉)</u> 군수는 <u>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</u></p>
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

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
3. 사망·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4.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

5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6.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제13조(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) ①·② (생략)

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

제13조(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 10일 -----

-----.

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18조 · 제19조 (생략)

제18조(민간위탁 사무의 감사) ①

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,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9조 · 제20조 (현행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음)

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-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
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
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행정과장 이 기 동

□ 지방자치법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